물량-4 조달물량 발주시기 조정 요청

【 건의요지 】

• **조달물량을 연초에 발주**하면 하반기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발주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건의

○ 귀사의 건의사항은 업체가 생산기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.

○ 방위사업청은 발주 및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업체의 계약이행 기간 부족과 그로 인한 납품지연 등의 문제는 전력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

○ 하지만, 계약 발주를 위해서는 **조달판단 및 확정과 원가산정 등에 어느 정도의 행정기간이 소요된**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,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**사전원가 산정의 적극적인 활용과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**을 통해 발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올해는 업체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쟁입찰의 경우 **긴급입찰로 발주**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.

○ 한편, 방위사업청은 **발주 前 행정소요를 최대한 단축**하여 **발주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**이며, 향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업체가 생산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< 문의처 :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-2079-6912 >

붙임자료	참고사항

□ **원가자료 성실성 추정제도**

○ (개요) 원가업무 수행절차를 현행 “先검증 後적용” 에서 “先적용 後검증”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도

-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업체의 원가자료산정 금액을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정함

○ (기대효과) 원가담당의 원가자료 확인·검토 및 원가심사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정가격 결정절차 간소화